

# 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26,309,000	9,789,270
일반회계	311,418,000	9,342,540
특별회계	14,891,000	446,730
기타특별회계	14,891,000	446,730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2,152,000	64,56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87,000	17,610
기반시설특별회계	1,056,000	31,680
주차장특별회계	11,096,000	332,88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273,34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.